

June 09,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38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0. 6. 1. ~ 6. 5.) -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을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당사자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기재부1]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의결

2020. 5. 29. 지난 3월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개정함. 주요 내용으로 ①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에 포괄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대상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추가, ② 임대형 혼합형 민자사업 관리운영의 상환기간이 50년으로 법 개정됨에 따라 기본계획에서도 30년에서 50년으로 상향, ③ 최근의 최저임금 상승을 임대형민자사업의 운영비에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와 최저임금 상승률의 차액 추가 지급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2차 민투심 보도자료



[기재부2]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 발표

2020. 6. 4. 신사업 도입을 통해 사회 전반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신규진입에 따른 갈등은 당사자간 조정이 원칙이나 합의과정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부 지원, ② (가칭)상생혁신기금 운영 등을 통해 기존 사업자 피해보상 및 관련 인프라 개선 등 지원 모색, ③ 6월 중 2대 분야 3개 우선 적용 과제의 상생조정기구 구성 예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보도자료



[참고자료]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



[기재부·국토부] 도심항공교통 추진전략 발표

2020. 6. 4. 일관된 정책을 통해 UAM(Urban Air Mobility) 실현하기 위한 도심항공교통 추진전략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한국형 운항기준(National ConOps) 마련 후 기상·통신·도시 등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역별 운항기준(Regional ConOps)을 구체화함, ② 미국·유럽 등의 인증체계를 벤치마킹해 세부 인증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간 상호 인정 확대 추진, ③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가공해 우수사업자에게 수단별, 지역별, 시간별 이동 데이터 제공 등이 있음

[참고자료] 2025년, 교통 체증 없는 도심 하늘길 열린다



[참고자료] 도시의 하늘을 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금감원] PEF(Private Equity Fund) 감독방향 발표

2020. 6. 1.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집행 약정액 등 투자여력이 충분한 PEF에게는 오히려 투자기회가 조성되어 하반기 이후 투자집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PEF산업의 양적성장에 걸맞는 질적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감독방향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성장자본 공급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PEF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사모펀드로의 질적성장 유도, ② 전업 GP·일반투자자 LP위주의 PEF를 중심으로 맞춤형 점검, ③ 신규 GP 등록시 운용인력 상근여부, 소재지 일치여부 등 실지점검 실시 계획 등이 있음

[참고자료] 2019년 PEF 동향 및 시사점



[과기부1] 2020년도 스마트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발표

2020. 5. 29.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본격 추진함. 주요 내용으로 ① 제주특별자치도(구좌읍), 김해시(진영읍), 강진군(강진읍), 완주군(봉동읍) 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지역으로 선정, ② 총 80억원 지원하여 올해 발굴된 총 20개 서비스를 개발·적용, ③ 운영성과에 따라 전국에 확산할 수 있는 스마트빌리지 모델 구축 등이 있음

[참고자료] 2020년도 스마트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과기부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2020. 6. 2.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 주요 내용으로 ①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 체제 채택, ② 이용자 친화적인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 완화, ③ 기존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시 해당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이중보관 문제 해소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산자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 6. 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 해상풍력발전소의 특별 및 기본지원금은 우선 건설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육지 및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하여 축소함, ②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40%)으로 새롭게 포함, ③ 해상풍력발전소가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1] K-드론시스템 실증 확대 및 실용화 촉진방안 발표

2020. 6. 3. 드론배송 조기 상용화 및 도심항공교통 산업 활성화를 위한 K-드론시스템 실증 확대 및 실용화 촉진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내년도 예산 부처안에 한국형 UAM 그랜드 챌린지를 통한 K-드론시스템 실증확대 예산 반영, ② 미 FAA(연방항공청), NASA(항공우주국) 등과의 협력을 지속하면서 국제적 드론교통관리 동향 적기 반영, ③ 올해부터 드론교통관리사업자 제공 업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을

담은 사업자 기준 마련 작업 착수 등이 있음

[참고자료] K-드론시스템 조기구축으로 드론 배송 택시 앞당긴다



[국토부2]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따른 국토교통 정책방향 전환의 혁신방안 논의

2020. 6. 4. 팬더믹이 국토교통 분야에 미친 변화의 양상과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도시와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함. 주요 내용으로 ① 기후변화에 따른 그린뉴딜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의 중요성, ② 데이터에 기반한 운영 프로세스 등을 통한 물류산업과 비즈니스의 혁신 방안, ③ 비대면 소비물류 급증에 따른 물류 시스템의 지하 터널화, ④ 전염병에 강한 새로운 도시구조 구축, 도시계획기법·제도 변화, 디지털인프라 확대 등이 있음

[참고자료]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토교통 정책방향의 전환



* 2020년도 제3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총 35.3조원 ※ 3차 추경까지 포함시 코로나19 대응 정책패키지 약 270조원 수준 (250조원 + 3차 추경 35.3조원, 중복 약 14조원 제외)	
주요 투자 내용	1.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11.4조원
	- 코로나19 등에 따른 성장률 하락 영향 반영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감면 등 요인 반영	
	2.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	5.0조원
	-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 자금 지원	
	-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3.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 경기보강 패키지	18.9조원
	1)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4
	- 고용유지·직접일자리·실직자 지원 등 고용안전망 강화	8.9
	-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0.5

주요 투자 내용	2) 경기보강 패키지	11.3
	-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7
	- 새로운 성장발판을 위한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그린 뉴딜+고용안전망 강화)	5.1
	-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2.5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코로나19 국난 극복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	•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 지속 •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존지원 • 위기, 한계 기업 보호 • 고용유지 및 안정화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 소비 진작 및 관광 회복 • 대대적 투자 활성화 • 수출력 견지 및 보강 •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역, 대외신인도, 금융, 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	• 철저한 방역리스크 관리와 국제 동조 • 국내외 경제 및 통상 리스크 최소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신속 추진	•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 방역 및 바이오 등 BIG3 미래동력화 • 유턴, 첨단산업 유치 등 GVC 허브화
산업·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	•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 •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 • 구조변화에 대응한 경제체질 강화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	•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 •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확충 • 포용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제고 •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활성화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22인)]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난 및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마련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급 할 수 있게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재난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조사할 수 있게 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5호, 제12조의4 및 제17조제5항제14호 신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5인)]

현재 행위의 중지 및 표지의 제거·폐기 등으로 예시된 시정권고의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정부가 피해기업들의 다양한 구제방법들을 도모하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그 시정권고의 내용을 공표하여 국민이 위해(危害)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여부에 대한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가 「발명진흥법」상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중지하고,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종결하여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무관청으로 일원화된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관리부서가 담당하며, 이사·감사·이사회 등의 조건이 기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비해 느슨하여 관리·감독이 취약함. 이로 인해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며, 해당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 또한 부칙을 신설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고, 이 법 시행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해당 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33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제89조제3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의 심각한 혼란이 초래된 후 한국을 포함한 2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에 대한 정상화·정리(Recovery & Resolution) 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회원국에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미국·EU 등 주요국들은 관련 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입법화하였음.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하여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상화·정리절차가 법·제도상 미흡하여 금융기관의 정상화·정리체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한 전 계약 종료권 행사의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정리절차가 개시될 경우 시장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금융회사 정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는 현행법 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하여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함. 이에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1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를 5년간 100% 감면과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 및 제118조의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의원 등 19인)]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수탁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상 개선요구에 납품대금의 지급 등 시정명령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시정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하여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지역물류기본계획은 해운을 포함한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수립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다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수립·변경한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3인)]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예약 등 분야에서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적용되어 소비자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분쟁 증가 및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위약금 지급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사전에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3인)]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가 환자 수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의료법」에 속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속한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속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 하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 마련(안 제 70조제1항제1호 신설 등)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금융위원회공고제2020-211호)]

금융그룹 단위의 내부통제체계와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및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비금융 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 등으로 금융그룹에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행정안전부공고제2020-376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관리·재지정,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절차 및 결합전문기관의 책무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 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Chong-Ah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